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01. 11. 2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2001. 11. 2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91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1. 11. 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상훈)

제안이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2000. 1. 12)이 제정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구·동 위임사무 및 적용되는 근거법을 조정하기 위한

□ 주요골자

【구 위임사항】

○ 위임사무명

- 당 초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변 경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당 초(2)
  - 개장신고, 납골증명
- 변 경(9)
  - 개장신고, 묘지의 일제조사,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개인, 가족, 중종·문종, 법인), 묘적부의 기록·비치, 무연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동 위임사항】

○ 위임사무명

- 당 초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변 경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당 초(1) : 매화장 신고 및 증명
- 변 경(1) : 매·화장 신고

【근거법 적용】

- 당 초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 변 경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27호
의결년월일	2001. 11. 13 (제91회)

제출년월일 : 2001. 11. 2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장사등에관한법률(2000. 1. 12)이 제정됨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구·동 위임사무 및 적용되는 근거법을 조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구 위임사항】

○ 위임사무명

- 당 초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변 경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당 초(2)
  - 개장신고, 납골증명
- 변 경(9)
  - 개장신고, 묘지의 일제조사,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개인, 가족, 중종·문종, 법인), 묘적부의 기록·비치, 무연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동 위임사항】

○ 위임사무명

- 당 초 : 매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 변 경 : 장사 등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당 초(1) : 매화장 신고 및 증명
- 변 경(1) : 매·화장 신고

【근거법 적용】

- 당 초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 변 경 :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1.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의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여성복지과	6. 장사 등에 관한 권한	가. 개정신고  나. 묘지의 일제 조사 다.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사설납골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개인, 가족, 종중·문중, 법인) 라. 묘적부의 기록·비치 마. 무연분묘의 처리 바.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사.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야.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자.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2조</li> <li>• 동법 제10조</li> <li>• 동법 제13조 및 제14조</li> <li>• 동법시행령 제13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li> <li>• 동법 제20조</li> <li>• 동법 제24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5조</li> <li>• 동법 제23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4조</li> <li>• 동법 제26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7조</li> <li>• 동법 제27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8조</li> <li>• 동법 제30조, 제37조 및 제38조</li> <li>•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0조</li> </ul>	구청장

별표 중 2. 동 위임사항의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기관
여성복지과	1. 장사 등에 관한 권한	가. 매·화장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li> <li>동법시행규칙 제2조</li> </ul>	동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1.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여 성 복지과	6. 매 화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생략)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 률 제5조	구청장	여 성 복지과	6. 장사 등에 관한 권한	가. (현행과 같음)	·장사등에관 한법률 제8 조 ·동법시행규 칙 제2조 ·동법 제10 조	구청장
		나. 납골증명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4조				나. 묘지의 일제조사	·동법 제13 조	
		(신설)	(신설)				다. 시설묘지, 시설 화장 장, 시설 납골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개인, 가족, 종 중·문중, 법인)	·동법 제14 조 및 제13조 ·동법시행규 칙 제5조 내 지 제7조	

	(신설)	(신설)				라. 묘적부의 기록·비치	·동법 제20조	
	(신설)	(신설)				마. 무연분묘의 처리	·동법 제24조	
	(신설)	(신설)				바. 무연분묘에 대한 개장허가	·동법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신설)	(신설)				사. 사설묘지 설치자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신설)	(신설)				아.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신설)	(신설)				자. 파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동법 제30조 ·제37조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내지 제30조	

신·구조문 대비표

2. 동 위임사항

현 행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여성 복지과	1. 매화장에 관한 다 음의 권 한	가. 매 화장 신고 및 증명	·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 률 제5조	동장	여성 복지과	1. 장사 등 에 관한 권한	가. 매·화장 신고	·장사등에관 한법률제8 조	동장

			<u>·매장및묘지 등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4조</u>					<u>·동법시행규 칙 제2조</u>	
--	--	--	---	--	--	--	--	-------------------------	--